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시설물 관리분야 특정감사(◇◇) —

2025. 11. .

처분요구일람표

1.	소관 시설물 안전점검 이행 미흡 (주의)	1
2.	☘☘☘ 공영주차장 하자 등 시설관리 부적정 (시정)	3
3.	「###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자검사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미이행 (시정)	8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관 시설물 안전점검 이행 미흡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별표 3에서는 안전점검의 종류에 따른 실시시기¹⁾와 점검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공공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이행할 경우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관리대상시설물 중 제2종 시설인 도로 절토사면 2개소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2025. 8. 3.까지 시설물의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도래일에서 30일 이내로(2025. 9. 2.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1) 붙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4~6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되며 시설물의 규모와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

했으나 소관 시설물의 점검기한 도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기한이 지난 2025. 9. 26. 용역을 발주하여 점검용역 계약 진행 중으로 점검을 지연하여 시행 중이다.

[표 1] 2025년 ◇◇군 안전점검 부적정 현황

관리주체	시설물명	종별	시설물 구분	시설물 종류	안전 등급	점검종류	점검 기한	비고
◇◇군 △△과	▶▶▶▶▶▶▶▶	2종	절토사면	도로사면	B	정밀 안전점검	8. 3.	10.17. 개찰
◇◇군 △△과	◁◁◁◁◁◁◁◁	2종	절토사면	도로사면	B	정밀 안전점검	8. 3.	10.17. 개찰

※ 자료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시설물관리현황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에게는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공영주차장 하자 등 시설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 #####과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종합건설(주) 등과 2022. 12. 23. 계약하고 2024. 4. 30. 준공하였으며, 현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시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의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자동차관련시설 지하2층 ~ 지상1층, 6,417㎡	#####과 (2021.9.~ 2024.04.)	22.11.03.	22.12.29 (24.04.30.)	260	8,756	&&종합건설(주) (주)◆◆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고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는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2024. 4. 30. 준공된 ☁☁☁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2025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공문 ‘&&&과-10634(2025. 5. 2.)호’로 하자검사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2025. 5. 1.~5. 2.)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2025. 6. 16. 하자검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 공종 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없음’으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하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하자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보수관리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옥상층 균열 및 누수, 난간 도장 훼손, 철골부재 부식, 외벽 도장 훼손 등 다수의 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파손된 부재를 방치하고 지하 2층 펌프실 내 공사자재 적재 및 방치함에 따라 예산 낭비, 이용자 안전상 우려가 있는 등 하자검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신뢰성이 저하되고 하자보수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표2] 하자 검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하자보수기간	정기검사현황	하자보수 관리부 작성 여부	최종검사현황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1,2차)	2022.12.23. ~ 2029.05.13.	2025년 상·하반기 실시 (이상없음 제출)	부	미도래
☞☞☞ 공영주차장 조성 통신공사	2022.12.22. ~ 2025.05.02.			하자담보 책임기간 경과 후 검사 실시 (2025.06.16.)
☞☞☞ 공영주차장 조성 전기공사	2022.12.22. ~ 2025.05.01.			
☞☞☞ 공영주차장 조성 소방공사	2022.12.22. ~ 2027.05.01.			미도래

[사진] ☞☞☞ 공영주차장 하자 등 시설관리 현황

주차장 난간 도장 훼손	주차장 난간 도장 훼손 및 녹발생
누수 및 부재 녹발생	누수 및 부재 녹발생
외벽 도장 훼손	외벽 도장면 훼손

트렌치 물고임 및 도막 훼손	배수구 미정비로 인한 물고임
옥상층 바닥 균열 발생	옥상층 바닥 균열 발생
파손 부재 방치	지하2층 펌프실 내 자재 적재 및 방치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누수·균열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보수 조치 및 적정한 시설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에게는 훈계, ###에게는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자검사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미이행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 △△△△과에서는 [표]와 같이 2021.8.10. &&종합건설(주) 계약하고 2022.7.25. 준공된 ###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시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총괄)	□□읍 ○○리 ***번지	도로개설 L=468m, B=12m	1,412	1,031	381	2021.08.17. 2022.07.25.	&&종합건설(주) 대표 \$\$\$	
###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차분)	□□읍 ○○리 ***번지	도로개설 L=468m, B=12m	816	709	107	2021.08.17. 2022.05.19.	&&종합건설(주) 대표 \$\$\$	
###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분)	□□읍 ○○리 ***번지	도로개설 L=468m, B=12m	596	322	274	2021.11.09. 2022.07.25.	&&종합건설(주) 대표 \$\$\$	

1. 하자검사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 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후 정해진 하자보수 기간에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발주기관인 ◇◇군 △△△△과에서는 [사진]과 같이 보도블록 처짐 및 단차 발생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²⁾까지 최종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2) 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022.7.27.~2024.7.26.(최종검사 만료일 2024.7.26.)

[사진] 하자 발생 사진

보도블록 처짐 및 단차발생	

2.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미이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³⁾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지관리기관인 ◇◇군 △△△△과에서는 급경사지 안전점검 대상 기준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관리시설물 최대높이 7.56m)이상이고 경사도가

3) 급경사지란 ①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②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③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관리시설물 길이 100m)인 인공 비탈면에 대해서 준공 후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및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도로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에게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